

【 4 】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안

제출연월일 : 2005. 2.
제출자 : 양주시장

1. 제안이유

○ 시에서 시행하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그와 관련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제8항의 규정 및 「지방재정법」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나.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라.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전용금지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가 시행하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제8항의 규정 및 「지방재정법」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상사업) 이 조례에서 “폐기물처리시설 대상사업”(이하 “대상사업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1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
2.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사업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3조(세입)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일반회계로부터의 천입금
2. 국·도비 보조금
3. 다른 자치단체의 부담금 및 출연금
4.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담금
5. 그 밖에 수익금

제4조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상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경비로 한다.

제5조(전용 금지)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.

제6조(준용) 이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관 계 법령 발췌 서]

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4조(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) ⑧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재정법

제5조(회계의 구분) ①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 ②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

□ 폐기물관리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7. “폐기물처리시설”이라 함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

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

제20조(주민편익시설의 설치)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또는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.

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

제22조(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)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.